

의안번호	2215886
의 퇴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 계 번호	26D00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257억 4,200만원, 2031년 2,099억 4,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3,233억 7,300만원(연평균 2,646억 7,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국가의 차등 보조 (안 제6조의4제3항)	325,742	291,867	261,511	234,311	209,942	1,323,373	264,675

주: 1.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국가의 차등 보조(안 제6조의4제3항)는 재량규정 재정수반 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6년 1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차이가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제주도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4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의4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제주도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은 5만원~28만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80세 또는 90세를 기준으로 최대 28만원까지 지급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수령하고 있는 금액보다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계에서는 연령 구분 없이 가장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설정
 - 해당 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차등 보조하는 경우 현재 수당보다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당 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본인) 수와 국가가 보조해야 할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산출
 - (참전유공자 수)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2022~2026년) 동안의 참전유공자 수 증가율 -10.4%¹⁾를 적용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수를 추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유공자 수의 증가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전체 참전유공자 수 증가율 적용

[표 2] 지방자치단체별 참전유공자 수 추정: 2026~2031년

(단위: 명)

구분	2026(1월 기준 실적지)	2027	2028	2029	2030	2031
서울	34,599	31,001	27,777	24,888	22,300	19,980
부산	15,480	13,870	12,428	11,135	9,977	8,939
대구	8,158	7,310	6,549	5,868	5,258	4,711
인천	10,647	9,540	8,548	7,659	6,862	6,148
광주	4,311	3,863	3,461	3,101	2,778	2,490
대전	4,499	4,031	3,612	3,236	2,900	2,598
울산	3,209	2,875	2,576	2,308	2,068	1,853
세종	806	722	647	580	519	465
경기	43,269	38,769	34,737	31,124	27,887	24,987
강원	7,395	6,626	5,937	5,319	4,766	4,270
충북	5,441	4,875	4,368	3,914	3,507	3,142
충남	8,142	7,295	6,537	5,857	5,248	4,702
전북	7,494	6,715	6,016	5,391	4,830	4,328
전남	7,949	7,122	6,382	5,718	5,123	4,590
경북	10,727	9,611	8,612	7,716	6,914	6,195
경남	11,922	10,682	9,571	8,576	7,684	6,885
제주	2,445	2,191	1,963	1,759	1,576	1,412

자료: 국가보훈부 제공자료(2026년 1월 기준 실적지)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국가보훈부의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1에서 제공하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증가율을 평균한 값

- (1인당 월지급액)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기준금액 28만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의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면 1인당 월지급액은 8만원~24만원으로 추정

[표 3] 국가가 보조할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월지급액 추정

(단위: 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차액
서울	200,000	280,000	80,000
부산	150,000		130,000
대구	140,000		140,000
인천	100,000		180,000
광주	126,000		154,000
대전	120,000		160,000
울산	140,000		140,000
세종	150,000		130,000
경기	66,660		213,340
강원	60,000		220,000
충북	80,000		200,000
충남	100,000		180,000
전북	40,000		240,000
전남	50,000		230,000
경북	100,000		180,000
경남	150,000		130,000
제주	280,000		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257억 4,200만원, 2031년 2,099억 4,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3,233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 [표 2]의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참전유공자 수, [표 3]의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월지급액,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서울	29,761	26,666	23,892	21,408	19,181	—
부산	21,637	19,388	17,371	15,564	13,945	—
대구	12,281	11,002	9,858	8,833	7,914	—
인천	20,606	18,464	16,543	14,822	13,280	—
광주	7,139	6,396	5,731	5,134	4,602	—
대전	7,740	6,935	6,213	5,568	4,988	—
울산	4,830	4,328	3,877	3,474	3,113	—
세종	1,126	1,009	905	810	725	—
경기	99,252	88,929	79,680	71,393	63,969	—
강원	17,493	15,674	14,042	12,582	11,273	—
충북	11,700	10,483	9,394	8,417	7,541	—
충남	15,757	14,120	12,651	11,336	10,156	—
전북	19,339	17,326	15,526	13,910	12,465	—
전남	19,657	17,614	15,782	14,139	12,668	—
경북	20,760	18,602	16,667	14,934	13,381	—
경남	16,664	14,931	13,379	11,987	10,741	—
제주	0	0	0	0	0	—
합계	325,742	291,867	261,511	234,311	209,942	1,323,3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당(제주도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차액을 국가가 100%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